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552
----------	------

제출일자 : 2018. 6.

제 출 자 : 달성군수



□ 제안사유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변경)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상인 노령화 등으로 혁신 동력이 부족하고 사회 변화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여 매출 침체 지속
-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어우러진 융합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상인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몰을 조성하고자 함
-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 등 시설 기준 충족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건축 구조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기반조성 사업비 1,255백만원 → 2,615백만원)으로 변경 심의 요청

○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주식 철골주차장 건립)

- 화원공설시장 10m이내 2개소, 총62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5일장과 명절 등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시장 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 불편 발생
- 화원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 화원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공간 확충 필요
-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

-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토지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
- 대구시 지정 제1호 관광지인 「비슬관광지」 사업과 연계하여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주요골자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건축구조	컨테이너 기성품(1층)	철골구조 및 컨테이너기성품(2층)	장애인편의시설, 소방 등 관련법규 충족
사업규모 (연면적)	650㎡	998.64㎡	348.64㎡ 증가
사 업 비 (건축공사비)	1,255백만원	2,615백만원	1,360백만원 증가

○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2-13 일원(현풍시장 북편)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139㎡(647평), 건축연면적 998.64㎡(302평)
- 총사업비 : 33.5억원(국 7.5, 시 3, 군 17.6, 조 3.9, 자 1.5)

※ 기반조성(건축비) 26.15, 청년상인육성 0.49, 점포인테리어 2.76, 마케팅 및 홍보

- 1.96, 창업자생력지원 0.15, 운영비 등 기타 1.99
-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 수행기관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현풍백년도개비시장 청년몰조성사업단)
- 사업내용
 - 청년몰 부지·점포·공용공간 등 기반조성
 -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 점포제공,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자주식 철골주차장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92-1
- 사업규모 : 2층 3단(건축연면적 3,365㎡(1,018평))
- 총사업비 : 17.95억원(국 4.99, 시 1.66, 군 11.3)
- 사업기간 : 2017. 6. ~ 2018. 10.
- 주차면수 : 100대(現 27대, ↑73대)
 - ▶ 1층 30대, 2층·옥상 각 35대

 화원시장 총 주차대수 : 135대 【신설 100, 기존(2주차장) 35】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17-14번지 외 5필지
(군유지 3필지, 사유지 3필지)
- 기 간 : 2017. 11. ~ 2018. 11.
- 면 적 : 9,011㎡ (군유지 2,300㎡, 사유지 6,711㎡)
- 주차면수 : 66면
- 사 업 비 : 19.5억원 (국비 7, 군비 12.5)
 - 14억원(국비7, 군비7) ⇒ 2016년 예산 기확보
 - 5.5억원(군비) ⇒ 2018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

- 붙임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8 (7)	25,521.5	37,086,372	3 (3)	11,074.4	11 (10)	36,595.9	41,645,023
	1.매입	3 (7)	18,968.2	24,484,116	1 (3)	6,711	4 (10)	25,679.2	24,632,767
	2.교환	2	1,219.1	516,256			2	1,219.1	516,256
	3.기타								
	토지								
	건물	3	5,334.2	12,086,000	2	4,363.4	5	9,697.6	16,496,000
처 분	계								
	4.매각								
	5.양여								
	6.교환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답	답	하빈면	봉촌리	1037-15 1037-16	3,171	1,700,000,000 (총사업비)	2018	평화예술센터 건립(변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7.12 의회의결
2	대	대	현풍면	하리	42	304	141,846,4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3	박진우		
3	대	대	현풍면	하리	43-2	281	131,114,6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3	박진우		
4	대	대	현풍면	하리	48-2	930	425,475,0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3	박진우		
5	대	대	현풍면	하리	51	282	129,015,000	2018.3	현풍면 하리 공영주차장 조성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103-2 제일탑스빌102호	박석호		
6	대	대	현풍면	하리	48-1	258	100,955,4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7	손상호		
7 (건물)	대	대	현풍면	하리	42,43-2 48-2,51	708.75	340,000,0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3	박진우 외 1명		
8 (건물)	대	대	현풍면	하리	48-1	35.35	17,675,00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4길 17	손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					주 소	성 명	
9 (건물)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9	36	1,200 (연면적)	1,386,000,000 (사업비)	2018.3	현풍백년 도깨비시장 청년몰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7.12 의회결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8	43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6	1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5	30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7	36							
	천	천	현풍면	원교리	1731-36	1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3	17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5	2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2	2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4	3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1	26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3	43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0	1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2	2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49	1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1	3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17	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0	56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29	22							
	천	천	현풍면	원교리	1731-28	122							
	잡	잡	현풍면	원교리	12-12	463							
	잡	잡	현풍면	원교리	12-13	997							
	천	천	현풍면	성하리	725-54	6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40	13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0	장	장	다사읍	서제리	1,934	1,934	861,403,600	2018.8	다사읍 서제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주)테크엔	2018.4 의회의결
11 (건물)	장	장	다사읍	서제리	475	475 (연면적)	158,581,220	2018.8				
12	대	대	다사읍	매곡리	14,979.2	14,979.2	22,708,467,200	2018.	달성북부권 (다사·하빈) 복합행정시설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59 상가 103호	(주)금상술	
13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3,500	3,500 (연면적)	9,000,000,000 (사업비)	2020.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1 (건물)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9	36	2018.10	현풍백년 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		신축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8	43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6	1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5	30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7	36					
	천	천	현풍면	원교리	1731-36	1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3	17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5	2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2	2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4	3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1	26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3	43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50	1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2	2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49	1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1	30					
	대	대	현풍면	성하리	725-17	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30	56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29	22					
	천	천	현풍면	원교리	1731-28	122					
	잡	잡	현풍면	원교리	12-12	463					
	잡	잡	현풍면	원교리	12-13	997					
	천	천	현풍면	성하리	725-54	63					
	대	대	현풍면	원교리	1731-40	13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 (건물)	잡	잡	화원읍	천내리	892-1	3,365 (연면적)	1,795,000,000	2018.10	회원공설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자주식 철골주차장 건설)		신축	
3	답	답	유가읍	용리	31-1	989	121,548,100	2018.7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로6길 3-13	현풍면 정재인	
4	임	임	유가읍	용리	산2-21	3,969	10,875,060	2018.7	비슬관광지 주차장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기읍 도의길 86	손삼출외 1명	
5	임	임	유가읍	용리	산17-14	1,753	2,068,540	2018.7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84-3	임은경외 1명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풍백년도개비시장 청년몰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2-13번지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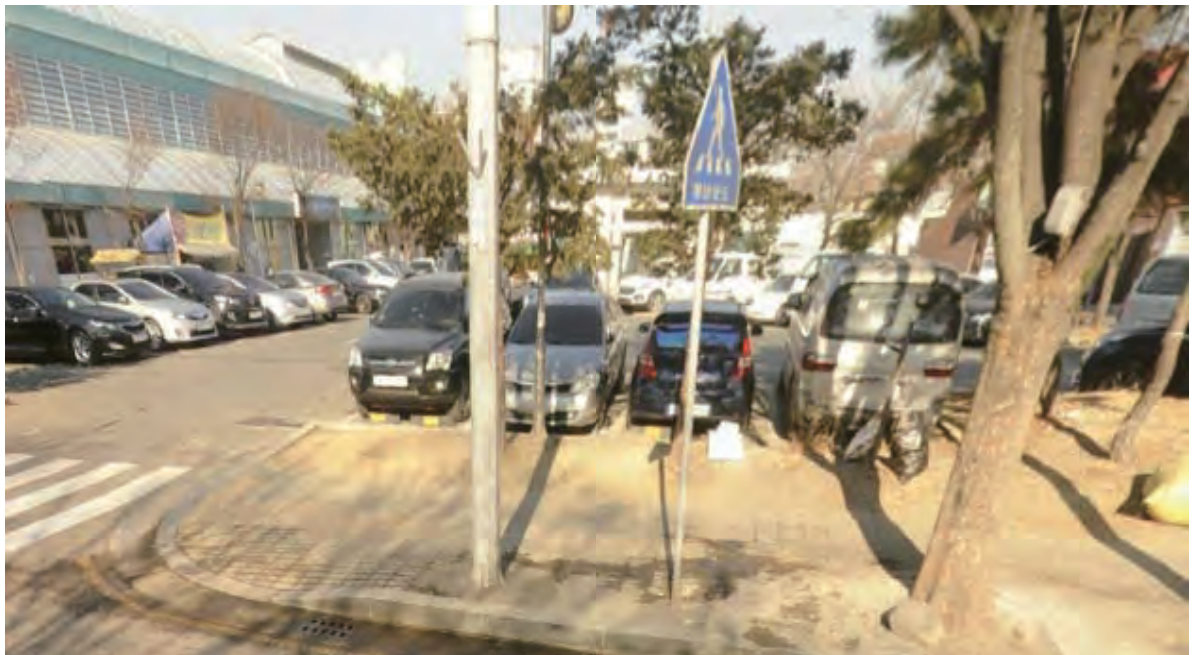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2-13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주식 철골주차장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92-1번지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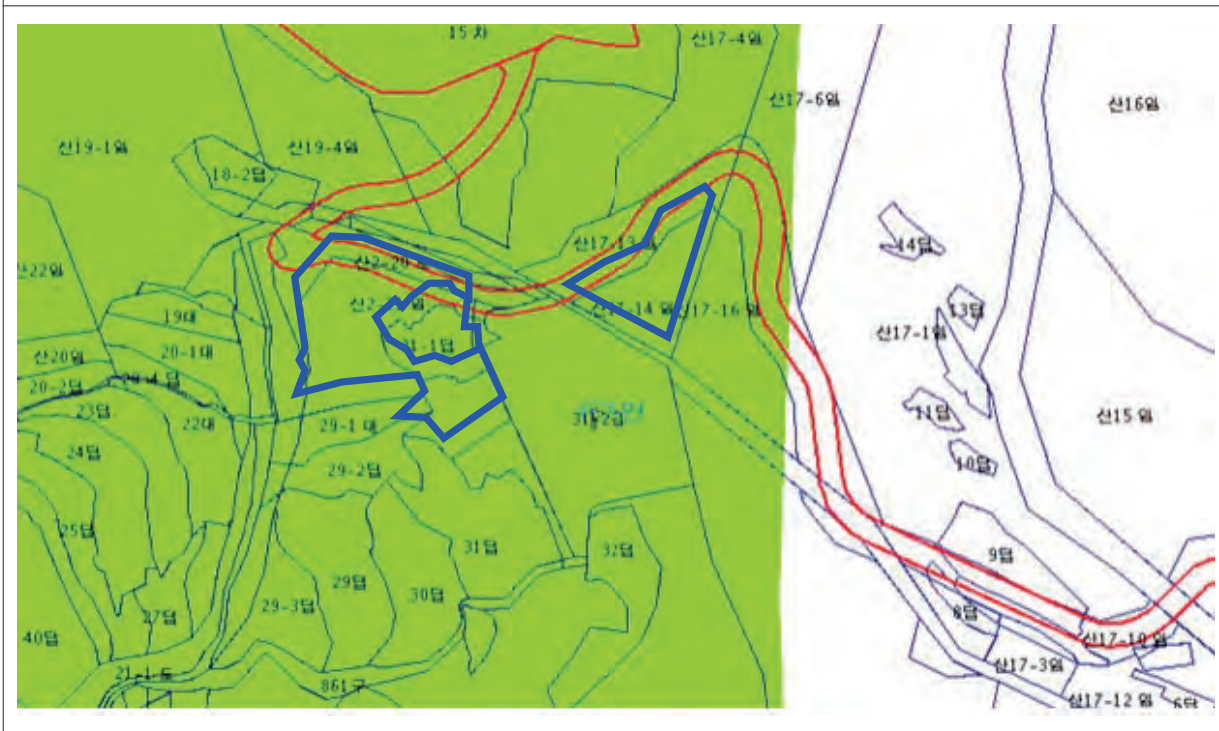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92-1번지



위 치 도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1번지 일원



사 진 대 지

지 번 |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21번지



지 번 |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1번지



사 진 대 지

지 번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17-14번지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

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